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4
----------	----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16.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1.
3.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 9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복지분야에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복지분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50플러스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서울특별시 51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주요사업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18년 예산 : 13,540백만원

## 3) 출연의 필요성

○ 50플러스 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할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음.
  -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sup>1)</sup>되어 있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 신규대비표

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 설>	

## 2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일반현황

### 가. 설립 목적 관련

- 50플러스재단은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 조례 제5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표 1>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범위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3.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4.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7.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8.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재단 정원은 2018년 8월 현재 76명이며, 총괄 조정을 하는 사무국 및 1본부, 3캠퍼스로 편성되어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현재 인력 정원은 76명이며, 현원 75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를 있으며 5급 직제에서 부족인원이 나타남.

<표 2> 50플러스재단 인력 및 시설 현황

■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76	1	4	8	12	13	24	14
현원	75	1	4	4	15	12	22	17

■ 시설 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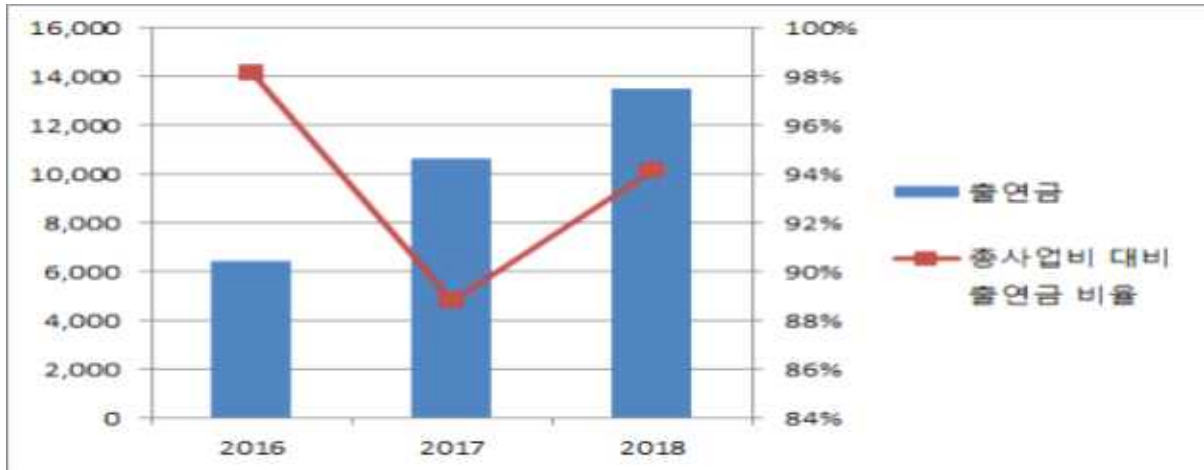
구분	위치	진행상황	건축규모	사업비	건립기간
서부(은평) 리모델링	서울혁신파크 8동 (통일로 684)	'16.5개관	- 연면적 : 3,956㎡ - 층 수 : 지하1/지상4	30	'15.3~'16.4
중부(마포) 리모델링	舊 산업인력공단 별관동 (백범로 31길21)	'16.11준공 '17.3 개관	- 연면적 : 4,509㎡ - 층 수 : 지하1/지상4	156	'14.7~'16.11
남부(구로) 신축	오류동 천왕2지구 (오류동 156-193외2)	'17.8 준공 '18.3 개관예정	- 연면적 : 5,714㎡ - 층 수 : 지하3/지상4	286	'13.8~'17.8
북부(도봉) 신축	도봉구 창동1-8 (청소차량차고지)	착공	- 연면적 : 6,289㎡ - 층 수 : 지하2/지상3	168	'15.10~'20.6
동남(강남) 공공기여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입찰준비 중	- 연면적 : 3,727㎡ - 층 수 : 지하3/지상1~3	-	'16.1~'21.5
동부(광진) 신축	광진구 자양동 57-153(학교용지)	사전절차중	- 연면적 : 4,200㎡ - 층 수 : 지하1/지상5	340	'16.1~'21.8

다. 예산 관련

- 집행부는 복지분야에서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플러스재단')의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다음 표와 같이 편성·지원하고 있음.

<표 1> 50플러스재단 5년간 출현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출 연 금	6,437	10,633	13,540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98.3	88.8	94.1

-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재단 설립 시기이므로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이 높을 수 있다고 여겨지나, 현재 50플러스재단 사업이 3년차에 이르렀으므로 재단 초기에 시행하였던 사업들이 안정기에 들었다고 보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8년도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중이 높은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평가를 통해 집행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재단의 자체수입 사업을 강구하여 점차적으로 출연금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참고1)

<표 2> 50플러스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백만원)		비 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4	-	-	-	-
2015	-	-	-	-
2016	6,560	6,437	98.3	-
2017	11,969	10,633	88.8	65.1
2018	14,377	13,540	94.1	27.3
총액	32,906	30,610	93.1	
평균(3개년)	10,968	10,203	93.0	

※ 2016년 출연금은 기본재산 700백만원 포함한 금액이며, 보조금사업 제외임.

- 50플러스재단은 아래 도표와 같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수익 등) 확보를 통해 2021년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7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설정한 바, 앞으로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같은 계획의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프> 50플러스 재단 설립 이후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의 목표





### 3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출연에 대한 종합검토

-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 현재 50플러스재단의 이사장이 부재인 상태이고 대표이사 또한 사임 예정이므로 50플러스재단의 정책의 목표 및 사업방향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신임대표이사가 임명된 이후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음.
-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여부,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양태에 따라 사업의 공정성 및 사회적 합의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려됨.

<표 4> 향후 5년간 출연 계획(50플러스재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6,785	20,977	21,851	22,761	23,029
50+재단	16,785	20,977	21,851	22,761	23,029

- ※ 1. 2019년 제283회 출연금 동의(안)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아래와 같이 캠퍼스 운영 예정임.  
 2. 우리재단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경영기획실-168(2018.01.10.)호에 근거한 자료임.

- 또한, 50플러스재단이 제출한 향후 5년간 출연 계획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앞으로 50플러스 재단 중장기 예산사업과 출연금 추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임대표이사의 운영방향과 업무수행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당위가 있다고 보임.

**참고자료 1**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출연금 집행 현황

■ 2018년도 50플러스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14,377	100.0	계	14,377	100.0
출 연 금	13,540	94.1	일반관리비	5,824	40.5
자 체 수 입	837	5.9	정책사업비	8,249	57.3
사업운영수입	324	2.3	예비비	304	2.2
기 타 수 입	13	0.1			
이월 잉여금	500	3.5			

■ 2017년 (12.31.결산)

(단위: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율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합 계				11,968,632	11,105,807	93
일반관리비				6,582,582	6,034,815	92
	인건비			3,148,360	3,035,383	96
	운영비			3,434,222	2,999,432	87
		경비		3,434,222	2,999,432	87
			복리후생비	404,035	339,761	84
			여비교통비	62,200	48,372	78
			공공요금및제세	205,795	145,289	71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율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소모품비	105,675	98,540	93
			도서인쇄비	28,015	14,157	51
			지급임차료	585,120	510,452	87
			지급수수료	470,792	445,696	95
			업무추진비	65,400	58,405	89
			관서업무비	25,920	21,601	83
			특정업무수행경비	6,725	5,803	86
			수선유지비	412,434	383,746	93
			차량유지비	11,100	4,906	44
			교육훈련비	60,600	43,036	71
			회의운영비	81,175	20,678	25
			자산취득비	909,236	858,990	94
<b>중장년층인생재설계및사회참여지원</b>				<b>5,361,250</b>	<b>5,070,992</b>	<b>95</b>
			1. 맞춤형캠퍼스교육및상담콘텐츠제공	1,232,037	1,177,931	96
			2. 50+세대이슈발굴및정책연구	633,600	570,086	90
			3. 정책동향리포트	88,400	87,036	98
			4. 정책개발을위한포럼	195,000	188,362	97
			5. 정책홍보및문화확산을위한사업	1,451,927	1,423,355	98
			6. 생태계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	407,106	370,957	91
			7. 모델발굴및지원체계구축	392,184	334,669	85
			8. 주도혁신일자리모델사업	133,876	120,303	90
			9. 정보시스템구축	817,120	788,293	96
			10. 50+캠퍼스기반구축및운영관리	10,000	10,000	100
			예비비	24,800	-	0

## ■ 2018년 예산집행 현황(7.31기준)

(단위: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율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합 계				14,833,045	6,148,368	41
일반관리비				5,864,167	2,729,022	47
	인건비			4,469,669	2,174,205	49
	운영비			1,394,498	554,817	40
		경비		1,394,498	554,817	40
			복리후생비	581,604	280,790	48
			여비교통비	64,800	6,947	11
			공공요금및제세	32,500	13,695	42
			소모품비	46,200	7,937	17
			도서인쇄비	40,140	19,711	49
			지급임차료	39,600	19,491	49
			지급수수료	257,374	73,605	29
			업무추진비	75,000	33,468	45
			관서업무비	42,000	15,463	37
			특정업무수행경비	12,480	5,192	42
			수선유지비	5,000	3,245	65
			차량유지비	6,960	2,179	31
			교육훈련비	94,900	38,091	40
			회의운영비	65,940	10,926	17
			자산취득비	30,000	24,077	80
중장년층인생재설계및사회참여지원				8,338,930	3,419,346	41
	1. 맞춤형캠퍼스교육및상담콘텐츠제공			1,704,789	773,912	45
	2. 50+세대이슈발굴및정책연구			575,000	43,839	8
	3. 정책동향리포트			65,000	1,679	3
	4. 정책개발을위한포럼			60,000	3,554	6
	5. 정책홍보및문화확산을위한사업			1,059,368	450,105	42
	6. 생태계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			430,200	218,971	51
	7. 모델발굴및지원체계구축			499,343	107,819	22
	8. 주도혁신일자리모델사업			159,336	56,315	35
	9. 정보시스템구축			1,293,000	655,230	51
	10. 50+캠퍼스기반구축및운영관리			2,492,894	1,107,922	44
성과급				300,801	-	0
예비비				329,147	-	0
	일반예비비			329,147	-	0
	보급예비비			-	-	-

## 참고자료 2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업별 현황

### ■ 사업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잔액(2017) 발생사유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합 계		7,574	10,844	7,180	4,718	394	6,127	94.8	43.5	
지출	사업비	5,361	8,248	5,071	3,419	290	4,830	94.	41.4	
	1. 맞춤형캠퍼스교육및상담 콘텐츠제공	1,232	1,678	1,178	774	54	904	95.6	46.1	예산집행 잔액
	2. 50+세대이슈발굴및정책 연구	634	578	570	44	64	534	89.9	7.6	
	3. 정책동향리포트	88	62	87	2	1	60	98.8	3.2	
	4. 정책개발을위한포럼	195	60	189	3	6	57	96.9	5.0	
	5. 정책홍보및문호확산을 위한사업	1,452	968	1,423	450	29	518	98.0	46.4	
	6. 생태계활성화를위한지원 사업	407	429	371	219	36	210	91.1	51.0	
	7. 모델발굴및지원체계구축	392	536	335	108	57	428	85.4	20.1	
	8. 주도혁신일자리모델사업	134	136	120	56	14	80	89.5	41.1	
	9. 정보시스템구축	817	1,293	788	655	29	638	96.4	50.6	
	10. 50+캠퍼스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10	2,509	10	1,108	0	1,401	100	44.1	
	보람일자리 사업	2,213	2,596	2,109	1,299	104	1,297	95.3	50.0	예산집행 잔액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복지분야에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복지분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50플러스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규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 사업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다. 출연의 필요성

- 50플러스 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류미경(☎ 2133-7798)